

제413회 정례회
' 23. 11. 29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3년 11월 17일
-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7일

3. 제안이유

-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,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-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8조)
-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2조)
-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5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.
- 충북도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, 본 조례 제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
<충청북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('17 ~ '23. 6.)>

(단위: 명)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3.6월
합계출산율	1.24	1.17	1.05	0.98	0.95	0.87	0.87
출생아 수	11,394	10,586 (△808)	9,333 (△1,253)	8,607 (△726)	8,190 (△417)	7,452 (△738)	3,930

※ 자료: 통계청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본 조례안은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구분	조문	규정사항	구분	조문	규정사항
총칙 규정	제1조	목적	실체 규정	제9조	지원사업
	제2조	정의		제10조	출산육아수당
	제3조	도지사의 책무		제11조	다자녀카드 발급 등
	제4조	다른 조례와의 관계		제12조	교육 및 홍보
실체 규정	제5조	입장료 등 감면	보칙 규정	제13조	사업의 위탁
	제6조	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·운영		제14조	도민참여 확대
	제7조	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·운영		제15조	포상
	제8조	임산부의 날	부칙	시행일, 다른 조례의 개정, 적용례	

○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규정으로,

- “임산부” 및 “난임”에 대한 용어 규정은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1)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규정하였고,
- “다자녀가정”은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와 동일하게 ‘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생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’으로 정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
1)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(정의)

1. “임산부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
11. “난임(難妊)”이란 부부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.

○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임신부 예우를 위한 도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음.

- 안 제5조는 도, 시·군 및 도 설립 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문화·체육·관광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임신부 및 그 동반자에 대해 입장료·사용료·관람료·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본 사업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세부 규정(임산부의 동반자 범위 및 감면율 등)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. -
- 안 제7조는 임신부 우선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같은 조 제2항의 경우, '대규모 점포, 병원, 은행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신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·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'는 임의 규정을 두었음.
- 이는 현행법령에 임신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'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'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, 법적 문제는 없음.

○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출생·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임.

- 안 제10조는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9조에 있던 것을 본 조례 제10조로 옮긴 것임.
- 안 제10조는 출산·양육에 관한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인 만큼 포괄적이고 기본적 취지의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에 두는 것보다는 출산·양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본 조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단, 조례 간 조항을 옮길 경우에는 현행 조례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

옮겨가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신설되는 조례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
 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는데, 여기서는 후자의 방식을 취한 것
 으로 문제가 없음.

□ 조례안 부칙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
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- 안 제11조는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기 위한 다자녀카드 발급에 관한
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는 없음.
 - 본 사업은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카드의 활용도를 높이고 가
 맹점 확대 등을 통한 다자녀 가정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
 으로 앞으로 다자녀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
 지원이 요구됨.
- 안 제13조는 조례에 따른 사업에 대해 관련 법인·단체등에 위탁해 추진
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전문적이고 효율적 시행이 가능토록 하였음.
- 안 제14조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친화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
 참여 확대와 이를 위한 민·관 협의체 등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
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 규정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출생아 수가
 감소하고 있는 현실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
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
- 또한 「모자보건법」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등 법률의 범위에서 규정된 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.

- 다만 본 조례안을 통해 임신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구축된 만큼 조례에 따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임.